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97 . 8

환경관리과

보 고 순 서

I '97 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2) 수질보전 대책
- 3) 자동차배출가스단속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

추진방향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의 투자재원 합리적 조달

가. 부과대상

- 건물 :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
 - 연면적 160㎡(48평)이상 건물
 - 단, 공장 창고 주차장등 제외. 주택 면제. 공공용 50%경감('98. 1기분까지).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97/1기분부터 부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6.30 , 12.31현재)시설물 및 자동차 최종소유자

나. 97/1기분 과징현황 ('97.7.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계획(97년)		부과현황(97/1)		징수현황(97/1)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074	4,988	33,310	2,750	27,136	2,475	90%
시설물분	9,100	3,011	4,571	1,688	4,162	1,621	
자동차분	54,974	1,977	28,739	1,062	22,974	854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구세입) 9% : 4억5천만원 예상

다. 부과기간및납기

○ 부과 기준일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수 질 보 전 대 책 】

추진방향

- 폐수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하천 오염 방지 순찰 강화
- 시민 홍보 강화

가.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 대상 : 187개소 (허가 21개소, 신고 166개소)

- 허가대상업소 - 병원, 도금, 인쇄 등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소
- 신고대상업소 - 세차장, 식품 등 특정유해물질 미발생업소 및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업소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정기 지도 점검 : 사업장별로 연간 1~4회이상 점검 실시
 - 수시 지도 점검 : 민원발생 및 특별한 경우 실시
- 점검내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 여부
 - 폐수 무단 방류 여부
 - 기타 환경 오염 행위

나. 지도 점검 결과 단속 실적

('97. 1. 3 ~ 8.27 현재)

점검현황		위 반 현 황				행 정 처 분 현 황				
		계	기준초과	무허가	기타	계	개선명령	폐쇄명령	기타	고발
업소 수	점검업소수									
187	314	26	8	3	15	26	8	3	7	8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추진방향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효율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가. 단속계획및실적

'97.6.30현재 (단위 : 대)

총계		비디오 단속		측정기 단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0,000대	17,956대	21,000대	15,830대	9,000대	2,126대

※ 행정처분 : 개선명령 257대, 과태료 : 146건 (2,295만원)

나. 단속내용

- 대상 : 운행중인 전차량 (휘발유, 경유, LPG 사용차량)
- 검사항목
 - └ 디젤차 - 매연
 - └ 가솔린, LPG사용차량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 방법
 - └ 노상단속 (운행중인 전차량, 장소 : (주)방림 앞, 공군회관 앞)
 - └ 차고지 단속 (사업용차)

다. 향후계획

노상단속과 차고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도록 구민홍보 강화하겠음.